

2. 청소년 권리증진과 인권보장 방안 제안

[제안 1] 청소년의 정치참여

18세 선거권 인하

영국 에밀리 벤(17)양이 내년 영국 총선에 출마한다. 그녀는 영국 노동당에서 14살 때부터 정당활동을 했었다. 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8세이고, 청소년의 정당활동이 보장되는 영국이기에 가능한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현재 19세부터 있다. 이를 18세로 인하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은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청소년의 정치의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청소년 스스로도 이미 선거권 인하를 요구해 왔으며, 2004년에는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로, 2006년에는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등 조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청소년의 선거권이 없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들의 핵심 사안인 두발 등 인권문제나 입시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18세 선거권 인하는 필요하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의 사례처럼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당가입, 그리고 학교 및 교외에서의 정치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청소년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외부활동 또한 가로막는 교칙들이 많다. 이를 변경해야 한다.

“고등학생은 정치를 하면 안될까?” 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학급 회장·부회장을 뽑는 경험을 통해 많은 부분을 민주시민으로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교육을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일 것이다. 청소년에게 주는 선거권은 청소년의 사회적 의사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이기도 하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면 ‘정치’가 교육적일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하면 될 문제인

것이다. 19세기에 노동자가 참정권을 얻었고, 20세기에는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다. 이제 21세기에는 청소년이 참정권을 얻을 시기이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생기고 여성의 권리가 눈부시게 달라졌다. 청소년의 선거권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 것이다.

피선거권 18세 인하

독일에서 19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안나 뤼어만이 있다. 안나 뤼어만은 독일 녹색당 소속으로, 어릴 때부터 그린피스 등의 환경활동을 하다가 15세에 녹색당에 가입하면서 정치를 시작했고, 2002년 9월, 독일의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의회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도 안나 뤼어만은 정치인 연금 문제를 제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미국의 힐스테일이라는 마을에서는 마이클 세션스라는 고등학생이 시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게 되면 그 직책에 맞게 책임감도 높아지고, 역할이나 하는 일도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님을,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처럼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또한 18세로 낮춰지는데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청소년이 좀 더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는 힘을 갖기 위해서라도 피선거권의 연령은 선거권과 함께 조속히 18세로 인하되어야 한다.

청소년계 비례 국회의원

현재 정당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대안이 대부분 교육사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을 대변하는 정책이 청소년의 입장과 관점이 아니라 성인들의 관점에서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예는 2005년 정부에서 실시한 ‘내신등급제’ 실시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유행했었는데, 바로 내신·수능·논술의 트라이앵글 속에 학생들이 모두 죽어나간다는 의미의 동영상

었다. 실제로 당시 많은 학생들이 짧은 시기에 가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성적과 입시의 부담에 따른 자살이었다.

만약 조금만 더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청소년을 입시의 경쟁으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처럼 청소년을 대변하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 청소년계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위원이 의회에 진출했을 경우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두발, 입시문제 해결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의 피선거권이 18세로 인하가 되어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비례 국회의원이 탄생되는 것이다.

[제안 2] 학생자치권 제도적 보장

현재 학생회 활동은 모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며, 자치활동과 교육적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학생회 자치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회 활동을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회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 대표를 선출하고 운영위원을 구성하며 대의원회 회의기구를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목적을 특별활동의 일환 또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치활동으로서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학생회의 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나를 학생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지도해야 할 학생 개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모 고등학교 학생회장의 말)

이렇듯 학교현장에서 학생회 활동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학생회를

법적, 제도적으로 학생들의 대표기구, 자치기구로 보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2010년 고교선택제 실행을 이유로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하며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점점 더 막는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D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이유로 학생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자치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축제를 없앤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또한 2005년에는 교육부에서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두발규정을 정하라는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회의 권리가 약한 것을 이용하여 파행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학생회장, 부회장을 불러서 “두발규정에 대해 불만 있나?” 라는 문고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 이렇듯 현재 중·고등학교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자치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의 의지로 학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교 의사 반영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 참가’이다.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생회가 회칙 제·개정권, 대의원회 결정권, 예·결산권, 학생회 임명권 등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가 기본으로 가져야 할 위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본적인 활동조차 실현할 수가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학생들이 대의원회의때 결정한 사항이라도 교사가 중심이 되는 지도위원회에서 거절을 당하면 그 결정은 실현되지 않는 것이 현재 학생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학생회 법제화와 동시에 학생회가 학교운영을 결정하는 학생운영위원회에 들어가 투표권과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의 3주체라고 불리는 교사·학부모·학생이 들어가는 학교운영

위원회에 학생들의 대표인 학생회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안 3]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 문화활동의 제도적 보장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가 보장되지 못한 현실에서 인터넷, 게임, 각종 스포츠,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통한 상업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는 급속도로 전파되어 자연스레 폭력, 음주, 흡연, 게임중독 문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시와 각종 규제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어디에서도 풀 수가 없다. 80년대 말 입시로 인한 청소년 자살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기가 20여 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입시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나 사회 어느 곳을 살펴봐도 입시, 공부, 규제 이외에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워 주는 체험활동, 공동체 문화형성, 자신의 꿈을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의 근본적 존재 이유가 이러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열악하기 그지없으며 그나마 존재하던 동아리도 최근 변화된 입시제도에 의해 폐쇄, 또는 전 동아리의 CA화 등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아리는 ‘자치문화·공동체 문화’를 형성

동아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5명, 10명, 20명 등 요구사항과 관심분야가 통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활동한다. 연극, 영상, 풍물, 댄스, 밴드 등 자신들만의 고유의 활동이 있으며 활동을 통해 공동의 작품 등을 생산해 낸다. 활동의 기획부터 공연 또는 전시, 작품 활동 진행, 결과물 창출까지 청소년들끼리 토론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자치문화, 창조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개인활동이라기 보다는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한 집단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기주의 문화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현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마음, 함께 고생하고 땀 흘리는 친구들과 간의 우정과

사랑을 키우고 함께하는 과정을 배우는 작은 사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교실이 1점, 2점으로, 또는 등급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적경쟁, 시험 때가 되면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만 오로지 몰두하게 만드는 분위기라면 동아리 활동은 자신들의 활동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마음 맞추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학교에서 경쟁문화, 사회에 나가도 상업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밖에 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통해 자치, 그리고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 -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공부 이외에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

실제 학교 정규수업에서 청소년들이 배우는 분야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최근 예체능 분야의 수업마저 더욱 축소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내에서 공부 이외에 자신의 재능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일단 대학에 가서 결정해라’라는 암묵적인 분위기와 ‘학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꿈을 키우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시기이다. 댄스에 관심이 많고 춤을 잘 출 줄 있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관심 없는 국영수를 배워야 하는 청소년은 그 시간이 지옥 같기만 하다. 미래에 배우가 되고 싶고, 방송인이 되고 싶고, 음악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분야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보장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사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이다. 비싼 돈을 들인 상업적인 학원이 아니면 배울 수 없다. 오로지 한 가지의 길만을 열어주고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이다.

스스로의 관심사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선택하여 배울 권리, 그러한 재능을 적극적으로 키워주고 가르칠 의무가 우리의 교육에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나마 다양한 문화적 분야를 최소한으로 경험하게

꿈 만드는 동아리 활동 또한 입시에 눌러 축소되고 사라져 가고 있으니 말이다. 동아리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고, 그 안의 인간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적 체험도 경험하게 하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동아리 활동의 현실 및 청소년 요구사항

하나, 학교 내 동아리 활동에 대한 편견을 깨라.

“동아리 부실에서 몰려있기만 해도 사고 치지 않을까 눈치 주며 내쫓긴다”,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은 대학 포기하고 노는 아이들”, “학기 초 CA 선택할 때 공개적으로 동아리 가입하지 말라고 방송하는 선생님” 등.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노는 아이들”이라는 편견과 차별 속에 위축되고 소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에서 인정받는 동아리 아이들은 “학교 이름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회나 경연장에서 상을 받아오는 아이들”이다.

둘, 재정지원 및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자치, 동아리 활동(특별활동)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재정이나 활동부실 지원이 되지 않아 활동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영상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장비(카메라 등)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 댄스 동아리는 연습 공간이 없어서 주로 놀이터나 지하철, 학교 복도에서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연습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셋, 교육과정에서 동아리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전인교육 및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과정으로 포함 또는 법적으로 보장(동아리 법제화)이 필요하다. CA 시간 및 특별활동 시간 축소 등을 반대하고 확대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안4] 학생인권법

UN아동 청소년권리조약에 보면 신체적 자유,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국내의 헌법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와 인권을 배워야 할 시기인 청소년, 그리고 그 배움의 터전인 학교는 그러한 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보인다.

“제발 머리 좀 길렀으면 좋겠다. 너무 짧아서 밖에 다니기 민망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에 대해 “머리 기르면 탄생각이나 하고 공부 안한다, 우리 학교는 명문이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학교, “내가 다 너희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라며 당구채로 200대를 때려 병원에 입원시키는 선생님, “야간자율학습 안하면 안되나요?” 라는 물음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팅할래?”, “니 성적에 잠이 오냐?” 라는 급훈으로 대답하는 교실, 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그래? 그럼 퇴학당하던가” 라며 대응하는 학교의 모습은 결코 정상적이지 못하다.

학생들은 이야기한다. “세종대왕도 머리가 길었지만 한글을 만드는 등 훌륭한 분이였다. 도대체 커피색 스타킹은 되는데, 검은색 스타킹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라고, “선생님에게 맞다보면 감정이 실려 있음을 느끼게 된다”, “우리에게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학교에서 무엇보다 제일 싫은 것은 “공부 잘하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 선생님께 이쁨 받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가 분명 존재하고, 그런 선생님들의 차별이 제일 싫다”라고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학생인권법’이다. 학생인권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로, 두발규제, 용의복장과 같이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및 개인 소지품, 일기검사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체벌 및 가해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 모든 사유에 대한 차별행위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명목으로 한 정규수업 시간 이전에 등교(0교시, 강제자율보충수업)시키는 행위, 추가학습,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위의 것들을 학생 스스로 지켜나가고,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 학칙제·개정, 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권한 보장 등을 담은 학생회 법제화를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3년에 한번씩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인권법이 만능은 아니다. 그리고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사람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자발성이며, 청소년들의 날로 높아지는 민주, 인권의식과 사회참여의식을 담아내기에는 학생인권법 또한 작은 그릇임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는 날로 높아지는 청소년들의 민주, 인권의식, 사회참여의식에 비해 학교의 태도와 법적 제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데에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생인권법은 최소한의 틀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 줄 것이다.

[제안 5]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 성폭력 근절

미성년들의 성매매(일명 원조교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최근엔 중국 수학여행지에서의 청소년 성매매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이 사이버 상을 통해 이뤄지며, 청소년들을 노리는 성인들의 손길은 사이버 상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비해 관련 대책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규들도 대부분 여성 일반의 성매매, 성폭력이거나, 청소년 성매매자의 처벌에 대한 것으로 그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과, 그 시작인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본질적 근절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먼저 실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성매매가 채팅을 비롯한 사

이버 상에서 진행된다는 심증은 있으나, 어디에도 그 실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된 통계자료조차 있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많이 이뤄지는지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메신저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성매매를 제안하는 쪽지가 날아오는가 하면, 채팅방의 방제가 아예 성매매를 암시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혹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들로부터 청소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색내기 성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올바른 성의식과 성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성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성상담센터, 성교육센터, 보호시설 등의 확충으로 성매매 청소년 및 성매매의 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을(가출청소년 등) 상담, 교육하며,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를 해결해 사회와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성매매자들에 대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처벌이 요구된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자의 경우 재범의 경우가 매우 높다고 한다. 한번 청소년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 다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신상공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며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토론발표 5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 방안

구본용
강남대학교 교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제4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청소년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7대 핵심 영역과 30개 과제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민간차원에서 국가 청소년육성의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과제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자에게 주어진 영역은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 방안’이며, 영역의 제목이 제시해주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즉,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내실화, 청소년쉼터 지원 및 미신고 보호시설 양성화, 축법·위법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Care 체계 구축, 청소년성범죄자 처벌기준과 재범방지제도 강화 등이다. 이들 4개 과제들은 새롭게 개발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각 과제들의 적절성과 한계 그리고 발전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핵심영역(정책목표)과 핵심과제(성과지표) 간의 적절성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성과지표 즉, 핵심추진과제를 개발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내실화,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의 운영을 활성화, 촉법·위법 청소년의 지원체계를 구축, 청소년성범죄 예방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청소년 사회적응여건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추진과제들이 다소 위기청소년들에게 치우쳐 있어 제한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 신장과 관련된 여건(환경)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떤 특성을 발달시켜 나가게 할 것인지를 구명해주는 소위 청소년 육성의 기본이념이나 목적(국가의 가치체계를 반영한 교육의 이념과 목적과 동일한 수준의 청소년육성의 기본이념이나 목적)일 것이며, 다른 세 가지는 청소년들의 적응능력을 발달시켜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환경이다. 따라서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이란 결국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육성의 목표를 정립하고, 나아가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제시되고 있는 4개의 핵심과제들은 ‘가정과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차원의 보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즉,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학교환경의 개선 등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이들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영역의 경우에는 담당하는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정책대안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특정 조직이나 어느 한 부처를 위한 기본계획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정된 과제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핵심과제는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인데 반하여 추진과

제는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생각이 든다. 추진과제들만을 중심으로 보면 핵심영역의 주제가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으로 하기보다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여건 개선’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사료된다.

만일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을 정책목표로 본다면 추진과제에는 가정의 교육기능이나 학교의 교육기능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의해 선정된 과제들은 해당 부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을 위한 기본계획이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청소년전문가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개별과제에 대한 의견

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내실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혹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정책의 핵심과제가 된 것은 이미 1-2년 전의 일이다. 이 과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예방활동이 핵심이며, 다른 하나는 자원의 통합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들이 중심이 되어 위기청소년들을 사전에 찾아내고 그들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들을 핵심기관으로 교육기관 등 민간자원들을 연계하여 이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 과제는 영국의 위기청소년지원제도인 Connexions Program을 모델로 하여 발전시킨 한국형 위기청소년지원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근본취지인 예방활동과 연계지원 활동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된 데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 사전분석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미 가정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도 부족한 시설과 인력의 부족이 이 과제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제시한 활성화의 필요성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의 확충과 관련 기관들이나 관련 부처의 협조체계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대안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소년쉼터 지원 및 미신고 보호시설 양성화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 바로 청소년쉼터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나 가정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쉼터를 이용해야 할 청소년들과 이용 가능한 시설들 사이에는 언제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자원들이 청소년쉼터 운영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 운영에 종교기관이나 사회기관,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예산을 배정받아 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쉼터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자원들이 청소년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한정된 예산만을 탓하다 보면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 주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촉법·위법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Care 체계 구축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제시한 바와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확대되고 소년사법에 대한 회복적 지원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촉법·위법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가 위촉한 범죄예방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선도유예청소년들 지도체계가 구축되어 왔으나, 청소년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복잡한 사회에서 복잡해지는 청소년문제를 지원하는 인력들에게는 반드시 전문성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봉사정신과 애정만을 가진 일반 민간인들이 이들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의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들이 이들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무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지원이 요구된다.

라. 청소년성범죄자 처벌기준과 제범방지제도 강화

청소년성범죄자들을 위한 신상공개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줄이려는 정책은 청소년들의 위기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국내에서 청소년들을 원조교제 등의 성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는 것은 성행위가 없었다고 성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만났을 경우에도 성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는 그루밍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범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지만 그나마 이러한 법의 시행덕분에 그 증가율이 둔화된 것인지는 모른다. 사실 그렇게 추측해 보고 싶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고 강화되어도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인 청소년

년대상 성범죄가 줄러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의 강화만이 아닌 또 다른 예방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에 필요한 기타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건 개선은 다양할 것이다. 대체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은 사회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거나,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의 활성화, 촉법·위법청소년 지원환경 구축, 그리고 성범죄예방활동 등은 사회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이다.

특히 위기청소년지원체제 구축이나 쉼터의 활성화는 위기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매우 필요한 사회적 기능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응여건 개선과제들이 지나치게 위기청소년 중심이며, 그것도 가정과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배제되었다는 아쉬움을 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이나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추가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해당 부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학생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의 학업도우미 제도 개발, 학업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기능교육이 가능한 대안학교 운영제도의 개발, 청소년지도나나 청소년상담자들을 통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제도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정립과 연계활동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지역자치단체에서 이들 기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모형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토론발표 6

<p>국제교류 다각 지원과 청소년지도자 복지 향상 방안</p>
<p>허 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미지센터 소장</p>

I. 청소년국제교류 다각 지원

<전략 방향>

1. 글로벌 시대에서 국제교류가 지닌 의미와 가치는 매우 다의적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여러 각도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절의 타문화 접촉은 인격형성과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미 이질 문화와의 공존단계를 넘어 문화의 혼합, 퓨전의 시대로 넘어간 한국사회의 미래를 감안해 볼 때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 및 조정능력 지원사업은 국가 어떤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교류는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문화의 다양성 시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how to live together)

을 습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과 고급화에 있어 국제교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육정책의 부문별 목표가 아닌 국가적 목표의 하나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청소년국제교류가 무한 경쟁시대의 국제사회 속에서 존립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양질의 고급 인력을 배출해 낼 수 있는 토양이기 때문이다.

2.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정책이라는 부문별 접근방식을 넘어서 거시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성격이다.

오늘날 청소년의 국제교류는 정부와 청소년단체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정부 측에서 조정할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수많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위해, 다문화 교육을 위해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다. 수천억 원이 가계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한국의 현 입시제도의 기본적 틀의 변화가 없는 한, 재정 부담이 많은 어린 학생들의 해외 연수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수적 증가와 가계 부문에서의 해외 문화 열기는 청소년국제교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리라 판단한다. 비록 이들 해외 연수가 외국 청소년과 만나서 체계적인 문화교류의 사업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관심 내지 참여의 집중도를 현저히 낮춰주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문 이외에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분야가 종교 및 기업들의 청소년 교류 사업에의 참여 증가이다. 각기 목적을 달리 하지만 봉사, 선교, 시찰 및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은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거시적으로 고찰하고, 사안에 따라 재정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문, 정책수립 등 여러 지원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3. 청소년 교류정책은 다부문적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에서 언급하는 청소년교류 활성화가 청소년단체가 수행하는 교류 사업에 국한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제 부문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교류의 진흥과 촉진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위상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 문화, 환경,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목표를 청소년과 연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양적으로 청소년교류가 증가하지만 질적인 관리,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의 발굴에 있어 전문성 제고라는 당면과제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4. 전문화된 다양한 교류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국제교류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교류사업의 내용은 주로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고 아울러 교류사업의 내용도 그 형태가 매우 단조롭다. 또한 각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긴 해도 그 구성에는 별 차이가 없다. 문화간 이해촉진 사업도 연령별, 전공별,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문화간 기초 이해교육 사업
- 전문영역 접목화 사업
(문화예술, 홍보, 문화재 보호, 복지, 환경, 도시개발, 에너지 등)
- 봉사사업
- 국제기구 공동 의제화 참여사업
- 재외 한국 청소년 교류 및 지원사업 등

위의 각각 영역에서 단순교류, 연구, 조사, 훈련, 창의성 사업 등 다종의 교류사업들이 개발될 수 있다.

5. 교류사업은 연중사업이다.

청소년사업은 본원적 사업, 중심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사업은 분명히 보조적 사업으로 인식되어 있다. 학교에서의 교육일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류사업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학기 중에는 주로 학업 위주로 생활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류사업에 참여하거나 개최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교사, 청소년지도자, 학생 및 청소년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교류 프로그램이 연중 준비되고 학업과 연동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인적교류 이외에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류, online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연중 실시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정책의 국제화 방향〉

1. 청소년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적 구분이 필요하다.

- 교류: 인적, 정보, 사업 등의 쌍방향 접촉
- 협력: 인적, 정보, 사업 등의 다자적 접촉과 공동책임

궁극적으로 한국에 청소년관련 국제기구나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쟁점, 이슈에 국내 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청소년계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아시아 지역 문화교류, 복지 분야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한국 청소년 prize를 만드는 기반조성 사업은 매우 유용하다.

2.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유네스코(청소년, 체육교육, 문화 등)뿐 아니라 마약, 지속가능한 발전 등 중요 의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 NGO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청소년지도자의 국제참여를 독려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의 창설 및 기구의 유치를 유도해 낼 수 있다.

유네스코의 경우, 과거 한국은 카테고리 II급의 준국제기구를 유치한 바 있다.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의 국내유치는 국내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제고, 국제화 마인드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단일 주제에 초점을 둔 국제기구보다는 청소년이라는 주제에서 파생된 여러 주제(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마약, 복지 등)와 연계된 국제기구의 유치가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

3. 글로벌 시대의 중요 의제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공통된 쟁점에 집중된 여러 사업 즉, 사례연구, 공동협력사업, 워크숍 및 인식제고 이벤트 사업 등이 국내 청소년단체나 기관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4. 교류사업의 전문인력 배양이 시급하다.

단기 및 중장기 교육과정의 개설 뿐 아니라 지도자들의 해외연수 및 교류의 기획 폭을 확대해야 한다.

- 단기 프로그램 : 국제회의, 청소년지도자 교류 포럼 참여(EU의 경우 EU차원에서 청소년지도자 교육이 프로그램 기획, 다문화 이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

- 중장기 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자 교류 포럼 유치 혹은 현지에서 스태프로 전 과정에 참여(EU 경우 청소년지도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참가자가 EU 국가 출신인으로 제한됨. 따라서 일종의 직원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 지도자를 파견하여 전 과정을 기획, 진행하도록 함)

청소년의 활동영역에 따라 자연권, 도시권, 교육적, 문화적 접근 등 다양함으로 협회 차원에서 이들 영역의 해외 단체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자료를 공유 혹은 관련 현지 기관에 청소년지도자를 파견하여 직접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교육 사업도 시행되어야 한다.

5. 청소년 지도자 국제교류학회 등 다양한 학회, 연구모임 등이 창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II. 청소년 지도자 복지향상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의 청소년수련시설은 720여개로 늘어났다. 1992년 150개소에 비교해볼 때 엄청난 양적 증가를 거듭했다. 이와 함께 이 시설에 종사하는 관계 직원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가 청소년 사업의 질적 향상 및 종사자의 복지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 청소년 사업은 국가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자체예산 시설의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고 법인은 열악한 예산지원을 토대로 시설을 운영하다보니 사업의 질적 향상은 커녕 작업환경의 개선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는 형편이다.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정부의 통계정책과 직업군 분류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사를 ‘사회복지 준전문가 중 아동·부녀자 복지상담원’으로 분류해 왔다. 청소년정책을 기획, 수행, 조정·관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복지와 재활이 요구되는 청소년 뿐 아니라 지극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 우수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을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비전을 갖춘 역량있는 인력으로 양성시키는 현장 전문가임을 간과하는 인식이

라 아니할 수 없다. 다행히 통계청이 개정 국제직업분류기준을 적용하여 10월 1일부터 독립적 직업군으로 분류하겠다고 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유네스코는 국제규범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사와 예술가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위해 각기 독립된 권고(recommendation)를 채택한 적이 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함께 해당 직무에 대한 독립성, 개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완비토록 각 회원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지도자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과 보수수준은 중하위권에 속한다. 능력있는 지도자들이 중도에서 이직을 하고 타 직종을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 인식제고 사업 (awareness-building programs)

우선적으로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시민의 기본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틀을 짜야 한다. 한 사회의 건강은 지도자의 양식과 전문적인 경험에 근거한다.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과 수준,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들을 언론매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의 날 제정은 어느 정도 인식제고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수많은 기념일의 하나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큰 실효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은 많은 기념일을 접하고 있고 이런 행사가 지극히 요식행위로 진행된다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2. 청소년지도자 활동의 독자성 보장

청소년활동에서 누가 주체인가? 물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by youth, for youth, of youth). 이와 달리, 청소년지도자는 주체가 되는 청소년을 지원, 격려할 뿐 아니라 자문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청소년지도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학생과 선생이라는 공동운명체로 인식되듯이 청소년활동의 주체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라는 등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비록 선생들의 위상이 과거와 달리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생이라는 직업은 우리 전통사상(삼강오륜)의 영향 속에 독보적인 위치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시설의 관리, 행정 등 여러 일을 함께 해야 하는 잡무와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선생과 같은 존경을 받고 있지 않다.

청소년지도자들이 학교와 여러 사회시설의 종사자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위상을 보장받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문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계속 분화될 전망이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 대처가 미시적 접근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거시적, 통합적 시각과 해결능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할 때이다. 학교,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 체육 등 여러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의 소지자가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는 바로 이점에서 탁월한 가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청소년지도자 지위 향상

유네스코는 열악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힘든 창작과정을 고려하여 각기 “교사지위에 관한 권고”,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고 이 권고를 따라 각 국가가 강력한 제도개선, 지원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청소년관련법과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특별히 청소년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구체적 방향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험, 연금, 급여, 처우개선, 작업환경 개선 뿐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박물관, 미술관, 학교 등과의 관계 등을 강조해야 한다.

요약집

국가발전을 위한 청소년분야 정책과제

(7대 핵심영역 30개 세부 추진과제)

총괄표

7대 핵심영역	30개 세부 추진과제
청소년 조직 위상 강화	1. 국가 청소년정책 전담부처(장관급)의 설치
	2. 시·도 청소년 전담공무원제 조속 시행
	3. 시도별 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수련시설협회 등 지원
청소년 역량 강화 예산 확대	4. 국가예산의 1%를 청소년전담예산으로 확보
	5. 청소년육성기금의 확충(1조원) 및 민간단체 중심의 집행위원회 운영
	6. 청소년단체·시설 세제지원 현실화
주5일제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 연계	7. 청소년 방과후 활동 통합운영체계 구축
	8. 학교내 1인1청소년단체 활동과 지도교사 가산점제 확대
	9. ‘방과후 학교’와 ‘학교 주말프로그램’의 청소년단체 위탁운영
	10. 학교의 청소년체험활동 최소시간이수제 도입

7대 핵심영역	30개 세부 추진과제
다양한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	11. 청소년수련시설의 현대화 지원
	12. 공공기관 이전 건물의 청소년활동복합(youth activity complex) 시설화
	1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 활동강화 및 상담지원
	14.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직업이행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권리증진과 인권보장	15. 청소년 참정권 확대(선거연령 18세)
	16. 한국청소년인권선언 제정·공포
	17. 정당내 청소년계 비례대표 신설
	18. 다양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19.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유해환경 개선
	20.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강구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	2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내실화
	22. 청소년쉼터 지원 및 미신고 보호시설 양성화
	23. 촉법·위법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Care체계 구축
	24. 청소년성범죄자 처벌기준과 재범방지제도 강화
국제교류 다각 지원과 청소년지도자 복지 향상	25. 민간차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강화
	26. 국제청소년기구 본부 유치 지원
	27. 재외 한국인 학교와의 교류 및 국제연대 구축
	28. 청소년지도자의 장·단기 연수·교류 지원
	29. 청소년지도자 공제회 신설과 ‘청소년지도자의 날’ 법제화
	30. 학교,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이용시설에 청소년지도자 배치

1. 청소년조직 위상 강화

과제 1)	국가 청소년정책 전담부처(장관급)의 설치
-------	------------------------

■ 제안배경

- 우리나라에서 독립적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타 부처 청소년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을 이루어 미래지향적 청소년정책 수립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 축소되고 있는 지자체의 청소년 행정조직을 확대·설치하여 일선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함

■ 필요성

- 미래사회 핵심자원인 청소년 자신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을 독립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기구가 매우 중요함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탄생(2006. 5)하였지만 타부처에 비해 낮은 위상(차관급)으로 인해 청소년업무의 총괄 및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권한미약으로 청소년 담당부서가 축소·폐지 및 통합되는 등 일선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 기대효과

- 독립된 청소년부처의 설치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능력이 확대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갖게 될 것임
- 전국의 시·군·구에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가 확대·설치되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관련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향상방안이 제시될 것임
- 수도권지역에 편중된 청소년정책 서비스를 농어촌 및 산간지역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청소년들이 제공받을 수 있음

과제 2) 시도 청소년 전담공무원제 조속 시행

■ 제안배경

-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광역시, 시·도 수준에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해야 함
- 청소년 전담공무원제가 시행되면 국가시행 법령(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될 것임

■ 필요성

- 청소년 전담공무원제의 도입은 청소년지도자의 업무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 청소년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필수적 사안임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례(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 설치)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공적 기능부여를 위해 부과한 청소년 전담공무원제를 조속히 시행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기대효과

- 청소년 전담공무원제 도입은 청소년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적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음
- 15,000여명의 국가자격 청소년지도사와 차세대(청소년관련학과 대학생) 청소년지도자의 청년실업대책 일환으로 활용되어 사기를 함양시키고 국가정책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임

과제 3) 시도별 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수련시설협회 등 지원

■ 제안배경

- 지방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단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함
-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유지·관리가 체계화되어 시설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지역단위 청소년상담과 자활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청소년지원센터 및 쉼터의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필요성

- 청소년기본법 제41조에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행·재정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0조에는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행·재정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및 설치 근거가 각 시·도 조례에 의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2007년 7월 현재 68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CYS-Net 허브기관으로 전환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향후 147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CYS-Net 구축 허브 기능을 수행하리라 예상되고 있어 지방기구 확대의 지원이 필요함

■ 기대효과

- 16개 광역시·도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적 지지기반이 확대될 것임
-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과 광역·지역단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및 시설들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설립과 지원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정책을 지방화시켜 균형적인 청소년정책이 추진될 것임

2. 청소년 역량강화 예산 확대

과제 4)	국가예산의 1%를 청소년전담예산으로 확보
-------	------------------------

■ 제안배경

- 국가예산의 1%를 효과적 청소년정책을 위한 수행에 필수적 재원으로 확보하여 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 필요성

- 주5일 수업제 확대, 청소년 여가요구 증대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구현과 청소년활동시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청소년예산은 향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여 재원 확보는 시급한 과제임
- 청소년관련 예산²⁾은 총 정부예산대비 0.095%(2006년도 청소년정책 예산 총 1,378억원 중 청소년부문 예산 일반회계 198억원의 점유율 0.014%, 청소년육성기금 722억원을 포함한 점유율 0.064%, 균특회계 454억원까지 포함시킨 점유율) 상태로 일반예산, 청소년육성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형태로 구분됨
- 활성화되지 못하고 청소년예산 지원의 부족으로 청소년단체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지원비가 부족하여 유아·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청소년시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됨

2) 2006년 청소년백서 참조

■ 기대효과

- 청소년예산의 증대는 청소년 육성·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청소년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권익 보호·증진이 크게 향상될 것임
-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면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다양화되고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임
- 사회투자정책의 차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이 확보되어 국가성장동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과제 5)

청소년육성기금의 확충(1조원) 및 민간단체 중심의 집행위원회 운영

■ 제안배경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예산이므로 정부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체와 민간기부금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신규재원 발굴과 기부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고갈위기에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의 확충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지방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조성된 기금의 집행을 위한 심의기구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 중심의 기금집행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야 함

■ 필요성

- 3,620억원의 청소년육성기금이 경륜·경정수익금 배분액(30%), 로또복권 등 사행산업침체, 국고지원에 대한 기금전환 등으로 2010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 주세, 교통세, 농특세 등으로 이루어진 지방양여금(청소년육성)의 일부가 지방청소년육성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타 부처 기금 중 청소년관련사업 지원금을 파악하여 이를 청소년육성기금에 전입시켜 운영하도록 해야 함
- 최근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업 자체자금 우선 활용, 국고 예산사업의 기금사업으로 이관,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이양 등 재정지원방식 변경을 유도하고 있음³⁾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함

3)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기획예산처 참조

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내며,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6년도 문화진흥기금사업으로 1,180건에 대해 179억 7,565만원을 지원함

■ 기대효과

- 청소년육성기금(지방포함)의 증대로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청소년 건전 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련활동 지원 강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지원 강화, 청소년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강화,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어질 것임
- 전국 16개 광역단체에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이 설치가 되고 기금 조성액 또한 일정액 이상 유지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구상·실현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 청소년육성에 대한 활동도 활발해질 것임

과제 6)

청소년단체·시설 세제지원 현실화

■ 제안배경

- 청소년단체가 현행 부가세법에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적용받아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해 주어야 함
-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가 부가세 감면, 기부금 모집, 활용 등의 혜택을 통해 청소년지원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기부금의 사용용도 제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운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함

■ 필요성

- 대부분의 청소년단체 및 관련 시설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8조에 의해 공익성 기부단체로 규정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부가가치세 면세규정) 동법 시행령 제30조(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면세대상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연령으로만 한정하는 사례가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모집된 기부금품은 제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의 원활한 기부활동에 대해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는 내용을 완화하여 청소년단체의 원활한 기부금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에 있어 원활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기부금품의 모집에 사용되는 운영비는 현행 15%에서 30%로 조정

- 기업체, 개인 등 기부금 공제액을 개인 10%, 기업 5%에서 개인 전액, 기업 20%로 상향 조정

■ 기대효과

-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치세 감면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강화되고 기부금에 대한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면 청소년단체에 대한 기부행위가 증가하고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활동이 활성화 될 것임

3. 주5일제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 연계

과제 7)

청소년 방과후 활동 통합운영체계 구축

■ 제안배경

-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시설을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사교육에 대한 비중과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과후 운영활동 전체를 총괄하고 관련계획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서비스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필요성

- 각 부처별 방과후 활동 지원기구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 특기적성, 학습지도 등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학습 및 사회적 문제해결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 4개 부처(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사업의 부처 간 정책의 비연계와 낮은 협력을 개선하고 방과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과 지도자 교육 등 전방위 정책지침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함

■ 기대효과

- 방과후 활동 전반에 대한 예산과 대상의 중복을 개선하고, 방과후 활동 운영에 대한 효율적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질 수 있음
- 방과후 활동 통합운영 체계를 통해 청소년 개인별 활동 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방과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및 효율성은 더욱 증대될 것임

과제 8)

학교내 1인1청소년단체 활동과 지도교사 가산점제 확대

■ 제안배경

- 주5일 수업제로 인한 수업일수의 축소는 학교체험 학습기회를 제한하고 단체활동을 기피하게 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함
- 청소년들의 체험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내 1인1청소년단체 활동 지도와 단체활동 지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산점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시행단체도 확대 적용해야 함

■ 필요성

- 주5일 수업제의 확대는 학교 내에서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영역 축소로 이어져 단체활동이나 체험활동의 기회가 축소되고 있음
-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인교육양성은 학교의 지원과 교사의 관심이 필수요인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단체활동 지도교사 인센티브(가산점) 제도가 일부 시·도에서 시행중이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대상단체도 대폭 확대하여 단체활동에 교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도교사 승점가산점제도는 서울(2007년 3월1일부터 가산점 부여 효력발생),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전남, 전북,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음

■ 기대효과

- 교사의 청소년단체활동 참여가 확산되어 학교내 단체활동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임
- 청소년들이 학교내·외에서 상시적인 단체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청소년의 건전여가와 체험기회의 제공이 가능해져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 문제 등에 대한 예방 및 회복기능을 이루게 될 것임

과제 9)

‘방과후 학교’와 ‘학교 주말프로그램’의 청소년단체 위탁운영

■ 제안배경

-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에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청소년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청소년단체와 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어 방과후 학교와 주말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

■ 필요성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는 2006년 학교참여율 98.9%, 학생참여율 42.6%, 총 프로그램 수 150,308개로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2.3개의 강좌를 수강하여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 방과후 학교에 교사 및 일부 지역사회 자원만이 참여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과외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학교 중심의 방과후 학교와 주말 프로그램을 지역중심의 방과후 학교로 전환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하게할 경우 방과후 청소년활동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임

■ 기대효과

- 방과후 활동운영에 청소년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학교생활 이외의 시간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 주말위탁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및 학교와 함께하는 연계방안을 시행한다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청소년활동의 주요 거점을 지역사회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과제 10) 학교의 청소년체험활동 최소시간이수제 도입

■ 제안배경

- 지식전달 중심 학교교육의 단점보완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체험학습에 중점을 둔 청소년활동 최소시간이수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 청소년기의 학교공부이외의 체험활동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통해 입시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청소년단체 및 시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필요성

-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교내 청소년활동이 위축되면서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시간이수제의 시행이 절실히 필요함
- 학교에서 청소년활동 최소시간이수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경우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역량개발과 함께 학교공부외의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을 기록·관리하게 됨으로써 교육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 354개의 청소년법인단체와 723개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정시간 이상의 체험활동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요구와 청소년활동의 신뢰성을 증진하고자 2004년 도입된 청소년활동인증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임

■ 기대효과

- 신뢰성 있는 청소년활동을 최소시간이수제 도입과 더불어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교, 청소년단체, 시설의 긴밀한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학생의 청소년활동체험에 대한 기록유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체험활동의 수준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사회진출 시 개인역량의 효과적인 판단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4. 다양한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

과제 11) 청소년수련시설의 현대화 지원

■ 제안배경

- 수익형 사업구조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전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청소년이 이용하는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 지원이 시급함

■ 필요성

- 설립 후 민간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전용 시설임에도 운영예산 마련을 위해 청소년보다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의 비율을 줄이고 특화사업이나 체험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매우 시급함
- 건립 후 15년 이상이 된 청소년수련시설이 많아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기대효과

-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청소년전용공간으로서의 기능 회복이 이루어져 청소년문제 감소와 함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노후한 시설의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활동의 질이 향상될 것임

과제 12) 공공기관 이전 건물의 청소년활동복합(Youth Activity Complex) 시설화

■ 제안배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 1. 16 법률 7061호)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건물 및 부지를 청소년활동복합시설(Youth Activity Complex)로 활용할 경우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전(移轉) 부지활용규정에 청소년시설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정책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주안점을 회복하는 상징성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 필요성

-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 도심 외곽에 배치되어 있는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권 내부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필요함
- 전 국토의 균형개발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배치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청소년시설로 전용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식하고 있음을 표출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도심내 청소년활동복합시설은 청소년문제의 감소,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생애 역량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며 청소년정책의 국가적 책무를 공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질 것임

과제 1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 활동강화 및 상담지원

■ 제안배경

- 탈북자 및 국내이주여성 가정확산은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과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의 성장을 유도해야 함

■ 필요성

- 2006년 한해 동안 한국인 전체 결혼 100쌍 중 12쌍(혼인 33만 2752건 중 3만 9690건으로 11.9%)이 국제결혼을 하여, 2005년의 13.6%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지만 1990년 100쌍 중 한 쌍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20년이면 국제결혼 이민자 2세만 167만 명으로 20세 이하 인구 5명중 1명(21%)을 차지하게 됨 (통계청, 2005; 중앙일보 2006. 4. 4)
- 2007년 1월 현재 6-20세 사이의 새터민 청소년은 1,047명으로 전체 새터민의 10.5%에 해당됨
-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인권문제, 사회적 적응 문제 등이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화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기대효과

- 다문화청소년의 사회부적응요소를 제거하고 한국인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되어짐
- 다문화청소년 및 일반청소년간의 활발한 교류로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와 상호 협력기회가 증진되어 질 것임

과제 14)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직업이행 지원체계 강화

■ 제안배경

-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방황하는 사회부적응 청소년들에게 진로선택과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함
- 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권 충족과 직업이행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필요성

-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보면 15~19세는 『공부』, 20~24세는 『직업』으로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고용시장이 양극화되어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청소년층의 실업율이 계속적으로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진로관련 지도활동을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임금삭감, 임금체불, 폭행 및 성적 피해사례 등이 빈번하여 근로청소년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구제상담 등이 필요함
-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을 정착화시키기 위한 총체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직업선택 이전에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체험을 함으로써 진로선택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받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청소년의 직업관련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와 관련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농어촌지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

5. 청소년 권리증진과 인권보장

과제 15)

청소년 참정권 확대(선거연령 18세)

■ 제안배경

-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단지 청소년을 유권자수로 인식함이 아닌 청소년의 국가 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고 청소년의 권리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참정권 확대는 청소년참여, 권리증진의 실질적 의미로 지난 16대 대선에서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였으나 부분수용(19세 선거연령) 되었음

■ 필요성

- 청소년의 신체적·지적 성장수준이나 사회의식 수준도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을 인정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차원에서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18세 선거권 부여는 Global Standard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선거연령에 대한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면서 청소년정책의 질적 향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되며 청소년인권 수준의 획기적 성장이 가능함
- 사회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직접 민주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세대통합을 꾀할 수 있음

과제 16) 한국청소년인권선언 제정 · 공포

■ 제안배경

- 청소년이 주체가 된 청소년인권을 확립하도록 ‘한국청소년인권선언 제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한국청소년인권선언’의 제정 · 공포가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필요성

-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활성화나 청소년권리의 괄목할 만한 신장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
-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실제 수준은 미흡하므로 총괄적 의미를 부여한 적극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이 권리와 책임을 향유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해석과 지표를 담은 ‘한국청소년인권선언’은 청소년인권과 참여의 구체성을 확립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함

■ 기대효과

- 선언적이고 표피적이지 않은 청소년들의 현실적 고민과 이상, 요구 지향성이 구체적으로 투영된 ‘한국청소년인권선언’이 되어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임
- 청소년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시혜적 정책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청소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보하게 될 것임

과제 17) 정당내 청소년계 비례대표 신설

■ 제안배경

- 정당내에 청소년관련 법안개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 각 정당의 당헌에 여성(열린우리당 당헌 제102조, 한나라당 당헌 제89조, 민주노동당 당헌 제46조)이나 장애 당원의 권리(민주노동당 당헌 제8조)를 명기한 것처럼 청소년분야도 비례대표로 적극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청소년전문가의 추천을 명문화해야 함

■ 필요성

- 청소년조직정비, 청소년관련3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등의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지면서도 대부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보다는 개별적 친분에 의거하여 법률안 개정추진이 이루어져 왔음
- 문화관광위(14.58%)와 정무위원회(10.14%)이 아닌 다른 위원회 소속의 의원에 의한 발의나 참여가 높은 점은 청소년관련 법안의 개정이나 발의를 위한 공동창구의 부재에 기인함을 입증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 참여와 권리의 중대성에 비해 정당내 정식통로가 부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의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규정한각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가 마련되도록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개정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청소년 비례대표의 신설은 사회 공공의 정책과 거버넌스 시대의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청소년의 중요성을 우리사회에 인식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
- 의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자 양성의 역할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미래 지도자 양성의 가시적 투자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과제 18)

다양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 제안배경

- 청소년참여기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실제 정책의제개발 및 반영에 다각도로 참여하도록 해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참여 기구의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의 참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필요성

- 전국의 청소년참여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210개 운영중), 청소년참여위원회(135개 운영 중), 청소년회의(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1세기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연맹), 대한민국청소년의회(홍사단), 청소년위원회(한국스카우트연맹),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이 있음
- 청소년참여기구는 실질적 청소년의견수렴과 대안 제시의 기능이 미약한 상황이며 여러 청소년참여기구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참여기구가 명분축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여 명실공히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와 권리를 증진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청소년참여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활발한 청소년 자치기구 네트워크화를 통해 역동적인 청소년참여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청소년 중심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 개개인의 지도역량, 리더십, 권리추구 등에 대한 자발적인 능력을 계발할 수 있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증진시켜 참여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음

과제 19)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유해환경 개선

■ 제안배경

- 성장기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야학습 등의 요소를 제거·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청소년의 음주, 흡연, 영양과다뿐만 아니라 유해환경 등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소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관리하고 예방하며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 필요성

- 심야학습을 통한 학업성적에 대한 중압감은 정서불안으로 이어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고,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피로는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게 됨으로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시 21시 기준으로 최대 22시까지만 과외교습시간이 허용 할 필요가 있음
- 음주, 흡연, 비만, 자살, 스트레스 등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확대되면 서 청소년의 건강권을 회복해 주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됨
- 청소년의 과다 에너지섭취량을 줄이고 권장량을 흡수하도록 슬로우푸드 운동(slow-food movement)을 전개하고 입시교육으로 제한된 체력활동을 강화하도록 청소년단체활동강화 및 체험활동의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체력증진과 비만관리 등에 건강보험급여의 지원을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 치료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환경은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범죄의 촉발과 함께 중요한 청소년건강권 침해요소로 규정할 수 있음
- 유해환경심의 기준과 범위를 강화하고 단속 인력의 확충을 위해 생활지

도 교사와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 청소년단체 지도자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도박성게임기 단속권을 부여, 청소년의 건강권을 회복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 기대효과

-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 10대 건강위해요소를 줄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건강한 신체를 유지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도 올바른 자아의식과 적극적 실천의지를 고양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수 있음
-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비하고 감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과제 20)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강구

■ 제안배경

-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권리침해 요소를 방지하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함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부모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학교갈등분쟁의 해결, 가해청소년이 소년범으로 양산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함

■ 필요성

-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500여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체폭행을 경험한 학생이 2.51%, 협박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3.08%, 금품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4.22%,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0.63%로 나타났음
- 학교폭력의 원인을 살펴 보면 폭력적인 영화·TV 프로그램·인터넷·뉴스 등 영상매체의 영향, 학교나 주택가 주변 유흥가 난립, 청소년들의 폭력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 포진, 교사들의 심한 체벌, 학교나 가정 및 지역사회 무관심, 가정 폭력 등이 있음
- 학교폭력 증가 추세에 따른 소년범과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실질적이고 성실하게 이행 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

보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함

■ 기대효과

- 학교폭력 가해의식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를 방지하고 가해 청소년의 재범대책이 마련되어 재범률을 줄일 수 있음
-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임

6. 청소년 사회적응여건 개선

과제 2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내실화

■ 제안배경

- CYS-net 이전에는 위기청소년 지원이 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종합적인 청소년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네트워크 구축의 지속적인 확대 유지가 더욱 요청됨
-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위기청소년지원체계가 확고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CYS-Net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현재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와 127개 시군구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함

■ 필요성

-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정책이 지난 2년 여간 전개되어 비약적인 지원 실적을 거둔 것으로 미루어 보아(2006년 20,000여명, 2007년 상반기 40,000여명) 지역 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이 결실을 맺고 있으므로 보다 더 지속적인 지원은 필수 요소임
- CYS-Net이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의 통합된 청소년 지원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청소년관련 부처의 정책 및 사업을 연계·조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부처 간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신속하고 적합하게 지원하는 One-Stop Service가 실현될 것임
- 사회의 일원으로서 위험·소외청소년들도 바람직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임

과제 22) 청소년쉼터 지원 및 미신고 보호시설 양성화

■ 제안배경

- 가출의 유형 및 비행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쉼터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최근 증가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단기쉼터와 함께 중·장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청소년쉼터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국가자원관리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필요성

-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할 장기쉼터의 부재로 현재 단기쉼터가 이중적 기능(일시보호 + 장기보호)을 하고 있어 가출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약한 상황임
- 경찰은 전국의 미신고시설을 약 3,000여 개소로 추산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미아, 무적 청소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존재하고 있음
- 미신고시설에서 청소년들의 인권과 보호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청소년의 가출형태에 따른 쉼터 기능과 역할의 차별화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재가출율의 감소 및 미자립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신고시설의 기준 마련을 통해 미신고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임

과제 23) 촉법·위법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Care체계 구축

■ 제안배경

- 촉법·위법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사회의 공적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정의 회복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촉법·위법청소년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의무수강명령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소년법상 보호대상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법치적 관점에서의 교정과 보호관찰만이 이루어져 재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후견인제도와 멘토 등을 도입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필요성

- 학교폭력, 소년사범, 가출 등 촉법 및 위법청소년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청소년 학대 및 방임, 부모의 적절한 보호·지도 부재 등 가정 내 문제가 주요한 원인이거나 혹은 문제를 증폭시키는 요인임
- 위법 및 촉법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부모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부모교육 의무수강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가정의 유대와 연대감 강화, 올바른 가정교육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여한 1호 처분대상 청소년(보호자에 위탁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도록 규정)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는 교정기능이 거의 없고 단순보호 기능위주로 운영되어 재범의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가 실질적 교정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후견인 또는 멘토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기대효과

- 촉법·위법청소년과 관계된 부처 간(국가청소년위원회·법무부·교육인적자원부 등) 연계강화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비행청소년들의 선도에 필요한 체계적 접근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
-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정의 관심과 부모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을 가정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과제 24)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기준과 재범방지제도 강화
--------	--------------------------

■ 제안배경

- 청소년성보호법의 발효와 함께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수위 제고와 지속적인 청소년성보호제도의 유지방안을 강구해야 함
-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지역사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예방교육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함

■ 필요성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2001년 8월 이후 해마다 두 차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왔으나 피해 청소년 수가 2001년 1차 때 242명에서 2007년 12차 때 48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여 강력한 처벌, 적법한 형량선고, 지속적인 치료프로그램 운영, 성범죄자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가해자와 피해아동청소년과의 격리 등 다양한 사후관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2007년 7월 2일부터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성범죄 재범자에 대한 사진, 실제거주지와 근무지의 상세주소 등을 10년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피해 청소년 및 가족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소년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기대효과

- 청소년 성범죄자의 영구적 혹은 안전한 격리를 통해 청소년을 비인간적 성범죄로부터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해 짐
- 성범죄 피해청소년을 위한 재활 인프라를 제공하여 안전한 사회복귀의 토대를 마련함
-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활성화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성 인권의식이 개선되어 짐

7. 국제교류 다각 지원과 청소년지도자 복지 향상

과제 25)	민간차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강화
--------	---------------------

■ 제안배경

- 정부주도의 국제교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풀뿌리 교류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지침을 개발해야 함

■ 필요성

- 현재 민간단체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건설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일부단체와 정부의 국가간 협약에 의한 교류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어 청소년단체 활동의 국제화를 위해 중·소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세계적인 국제교류활동의 흐름은 정부중심에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자간 국제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주최해온 다자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제청소년광장(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제잼보리대회(한국스카우트연맹), 아구노리대회(한국걸스카우트연맹), 국제해양축전(한국해양소년단연맹), 동북아청소년포럼(MRA), 국제청년야영(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 기대효과

- 외국의 네트워크를 통한 최신의 청소년활동과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이를 우리나라 청소년단체 활동 및 정책에 접목하여 청소년발전에 기여함
- 세계 각국에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여 청소년단체 활동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회가 됨

과제 26)	국제청소년기구 본부 유치 지원
--------	------------------

■ 제안배경

- 청소년관련 주요 국제기구인 AYC(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WAY(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의 본부가 말레이시아에 위치하여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야 함
- 청소년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청소년분야는 물론 우리나라 국익 증진의 기회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필요성

- 우리나라 청소년분야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미약한 공동연대와 협력수준을 개선하고 우리나라를 국제청소년활동의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기구의 유치가 절실함
- 경제발전수준에 비해 미약한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청소년관련 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여 국제화 시대 속에서의 청소년단체활동 및 사회전반의 국제화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세계 청소년활동의 허브기능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제고시키고 국제화를 향한 범사회적인 역할에 있어 한축을 이루게 될 것임
- 국내 청소년관련 전 분야에 걸친 국제화의 확산과 청소년관련 최신의 정보와 자료수집이 가능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발전에 기여하게 됨

과제 27) 재외 한국인 학교와의 교류 및 국제연대 구축

■ 제안배경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청소년 및 교포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한인 학교와 민간 청소년단체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재외동포 및 한인 청소년들과의 동포의식을 함양하고 상호 우의와 친선을 증진함으로써 중국의 화교벨트에 못지않은 한인청소년벨트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필요성

- 한민족 동포사회를 이어갈 재외 한인 및 동포 청소년들과 우리나라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중국의 화교벨트가 현재 중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모국인 한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진 재외 한인 및 동포 청소년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재외동포 및 한인 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통해 향후 국가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임
- 우리나라 청소년과 재외 한인 및 동포 청소년과의 연대의식이 강화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한민족 인적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것임

과제 28) 청소년지도자의 장·단기 연수·교류 지원

■ 제안배경

- 국제화 마인드가 절실한 청소년지도자의 국제연수와 교류활동이 예산부족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청소년지도자들의 재교육,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해외연수와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필요성

- 현재 국내 청소년지도자에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및 재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며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능력 또한 외국의 청소년 지도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약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국제교류 활동은 90%이상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교류활동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지원이 필요함
 - 단기 프로그램 : 해외 프로그램 참가 지원
 - 중기 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Course Work 참여 지원
 - 장기 프로그램 : 외국 청소년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의 인턴십 지원

■ 기대효과

- 청소년지도자들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프로그램 개발 능력 향상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이 도모될 것임
- 세계 각국의 청소년지도자 교육과 관련한 선진기법을 학습하고 외국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사례를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에 큰 역할을 할 것임
- 세계 각국의 청소년지도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 연대활동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과제 29) 청소년지도자 공제회 신설과 ‘청소년지도자의 날’ 법제화

■ 제안배경

-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간외 근무, 낮은 보수체계)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사명고취를 위해 공제회를 신설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의 복지환경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 청소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희생과 봉사정신을 사회에 홍보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자의 날’을 청소년기본법에 명시함

■ 필요성

- 활동중 불의의 사고에 대한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사회관리 및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현장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 공제회 신설은 청소년지도자의 자부심을 강화하고 안정적 청소년지도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필요함
- 청소년을 위해 땀을 흘리고 봉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6 대한민국 청소년지도자 대회에서 ‘청소년지도자의 날(9.27)’ 제정을 결의하였음

■ 기대효과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 청소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사회적 지지기반이 강화됨

과제 30) 학교,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이용시설에 청소년지도자 배치

■ 제안배경

- 지방화 시대 지역중심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학교,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이용시설에 청소년지도자 배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이용시설 내에 전문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농어촌지역 청소년시설 인프라의 질적(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향상의 기회를 증진시켜야 함

■ 필요성

-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재편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과 함께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편익시설로서 운영 중이나 청소년의 이용률은 미비한 실정임
- 농어촌지역의 경우 청소년활동이 미비하고 청소년관련시설도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의 배치가 절실함
- 대다수 학교 및 청소년이용시설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문적인 지도와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지역단위에서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단위의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전국 주민자치센터(709개) 청소년지도자 2인 1,418명, 256개 시·군·구 청소년이용시설(평균 3개) 청소년지도자 5명 3,840명이 채용되면 총 5,258명의 고용효과가 있어 차세대 청소년지도자의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MEMO

청소년분야 과제개발 특별위원회 명단

□ 특별위원

구분	성명	소속단체
위원장	김정숙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위원	신흥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위원	황순길	한국청소년상담원
위원	김금순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위원	박현동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위원	맹영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원	이근화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위원	김형권	오운문화재단
위원	박옥식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원	장동현	홍사단 청소년연구원
위원	홍경표	한국YMCA전국연맹
위원	하태춘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위원	이교봉	한국청소년수련원
위원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위원	오세경	청협 실무위원회
위원	정덕원	청협 청소년회의

□ 실무추진위원

구분	성명	소속단체
실무위원	양철승	한국청소년연맹
실무위원	최명완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실무위원	이영일	서울 홍사단
실무위원	조남익	한국스카우트연맹
실무위원	지세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실무위원	고기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행정간사	이준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MEMO

[Faint, illegible text in a large rectangular box]

[Faint text]

[Faint, illegible text in a large rectangular box]

MEMO

[Faint, illegible text in a large rectangular box]

[Faint text]

[Faint, illegible text in a large rectangular box]

MEMO

제43회 청소년정책 연구세미나
국가발전을 위한 청소년분야 정책과제

발 행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발 행 인 | 김 석 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편 집 인 | 신 흥 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발 행 일 | 2007년 10월

주 소 | (157-856)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대표전화 | 02-2667-0471

전 송 | 02-2667-0479

홈페이지 | www.koreayouth.net

전자우편 | ncyok@koreayouth.net